(별표 #1)

제1종 피해물과 제3종 中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 기본보수표

종목	손해사정액	요율(%)	기준액(원)
제1종 피해물 / 제3종 피해물 中 자동차가 아닌 경우	1천만원 미만	기본료	660,000
	1천만원 이상 - 2천만원 미만	5.06	1,012,00
	2천만원 이상 - 3천만원 미만	4.18	1,254,00
	3천만원 이상 - 5천만원 미만	3.74	1,870,000
	5천만원 이상 - 1억원 미만	2.88	2,882,000
	1억원 이상 - 2억원 미만	2.20	4,400,000
	2억원 이상 - 3억원 미만	1.95	5,814,100
	3억원 이상 - 5억원 미만	1.61	8,030,000
	5억원 이상 - 10억원 미만	1.27	12,650,000
	10억원 이상 - 20억원 미만	1.11	22,200,000
	20억원 이상 - 30억원 미만	1.02	30,690,000
	30억원 이상 - 50억원 미만	0.91	45,650,000
	50억원 이상 - 100억원 미만	0.4가산	
	100억원 초과금액	0.2가산	

Tip) 1. 제3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(소액대물)등 단순 현장조사 및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 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%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.

2.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(기본료)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

(별표 #2)

외산 이륜차(자전거) 포함 기본 수수료

<table>
<tr><th>손해사정 금액</th><th colspan="2">보수 인정금액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최저 수임료</td><td colspan="2">80,000원</td><td rowspan="8">보험금
손해사정시
적용</td></tr>
<tr><td>100만원 이상 - 200만원 미만</td><td colspan="2">120,000원</td></tr>
<tr><td>200만원 이상 - 300만원 미만</td><td colspan="2">180,000원</td></tr>
<tr><td>300만원 이상 - 500만원 미만</td><td colspan="2">250,000원</td></tr>
<tr><td>500만원 이상 - 1,000만원 미만</td><td rowspan="2">350,000원 +
손해절감액의 7%</td><td rowspan="4">최고
80만원</td></tr>
<tr><td>1,000만원 이상 - 2,000만원 미만</td></tr>
<tr><td>2,000만원 이상 - 3,000만원 미만</td><td rowspan="2">450,000원 +
손해절감액의 7%</td></tr>
<tr><td>3,000만원 이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Tip) 위장사고 적발시 보수금액 x 1.5배</td></tr>
</table>

Tip) 손해사정금액이란

①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

② 과실상계 전 금액기준(간접손해 비용 제외)

(별표 #3)

선임 손해사정사 여비 · 교통비 지급기준

	교통비			
산출근거	KTX	충청권	실비	대전역 일반실 왕복요금
		영남권		부산역 일반실 왕복요금
		호남권		목포역 일반실 왕복요금
	항공기	제 주	실비	제주공항 아시아나 항공 일반석 왕복(평일)
	고속버스	출장도시		고속버스 터미널
	승용차		유류대 통행료	-
	숙박비		40,000원	1일당
	일비		30,000원	식대(예비비 포함)

Tip) 대한민국 內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(시단위 기준)의 '여비· 교통비'는 일비만을 지급한다.

단,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'여비· 교통비' 지급기준을 적용한다.